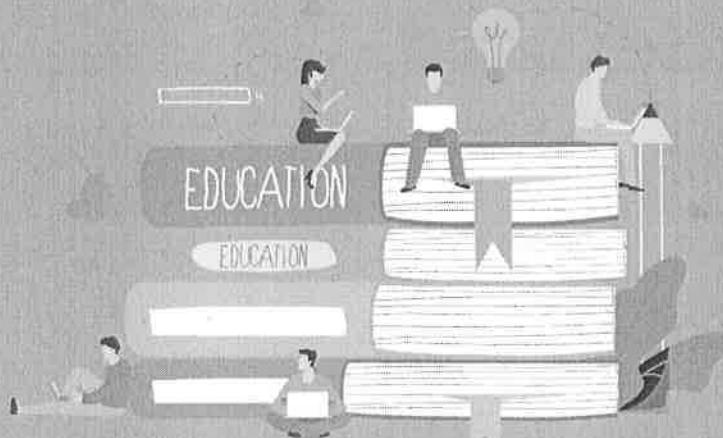


제2부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01**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입니다. 실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부분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나 법은 침해행위자를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활동 보호 규정은 주로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외의 자, 즉, 학교관리자, 교육행정기관, 동료교원, 지역주민, 언론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02**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객체****교육활동 중인 교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규정은 교원의 신분 자체를 보호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활동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교원에 대한 위법행위에는 교원지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03**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제2조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04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내용

폭행·상해(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1) 개념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고,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며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신체의 안전성을 해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원의 신체를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잡아서 흔드는 경우
- 큰소리로 폭언을 하여 피해교원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우울병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한 경우

Q. 수업 중 학부모가 찾아와 저에게 폭언을 하며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지팡이에 맞지는 않았는데 이후 저는 수업을 할 때도 너무나 두려워 수업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폭행죄에 해당할까요?

A.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대판 89도1406; 대판 2000도5716)

- 위 이야기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해를 돋구자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례 유형으로 각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협박(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1) 개념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뜻하며, 구체적이며 실체적인 피해가 예측되어야 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위험한 물건을 교원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위협한 경우
- 피해교원에게 학교폭력을 은폐한 사실을 기자와 교육청에 말하겠다며 위협한 경우

Q. 아무런 말없이 행동으로 저를 위협하였으면 협박인가요?

A.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며,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피해가 예측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행동에 의하여서도 해악을 고지할 수 있기에 협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대판 74도2727; 대판 2010도14316)

모욕·명예훼손(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1) 개념

모욕은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하고, 명예훼손은 공연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체적 진실을 전달하더라도 그것이 상대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특정교원의 외모를 지칭하며 경멸적으로 말하는 경우
- 다른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는 경우

Q. 교사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나요?

A. 전화 통화 중 욕설은 일대일 대화 중이므로 모욕죄의 공연성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형법상 모욕죄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을 비방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한 명에게만 이야기 했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A.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1인이라도 그 말을 들은 상대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성립합니다.(대판 96도1007) 즉,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타인에게 해당 사안에 대하여 말을 옮기거나 대화 내용을 저장하여 온라인상에 올릴 경우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손괴(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1) 개념

다른 사람의 재물, 문서, 기록 등을 부수거나, 숨기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이물질을 담임교사 차량의 에어컨 배기구에 부어 손상을 입힌 경우
- 담임교체를 요구하며 교실에 있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깬 경우

Q. 국·공립학교 공용물을 파손한 경우에도 손괴죄가 적용되나요?

A. 국·공립학교의 공용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부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성범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2호)

1) 개념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 및 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 등을 통하여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인 접촉을 강요하여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상담 시 허리, 종아리, 히벅지 등 일반인의 시각에서 접촉이 꺼려지는 부위를 고의로 접촉하는 경우
-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Q. 학부모님이 휴대 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제 얼굴을 등의 없이 수 회 촬영하였고, 이것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다른 학부모에게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 드는데 이것은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나요?

A. 형법 제 243조 소정의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경우처럼 얼굴은 성적인 음란함을 유발하는 부위라고 인식되기 힘듭니다. (대판 94도 2266)

• 위 이야기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해를 돋구자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례 유형으로 각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3호)

1) 개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① 비방할 목적으로 다수에게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事實을 이야기 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판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②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보내는 행위, ③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 역시 구체적 진실을 전달하더라도 그것이 상대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폭행, 학대하고, 이를 따지는 학부모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허위事實을 해당 교사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게시한 경우
- 담임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새벽시간을 포함한 수 일 동안 “죄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교사의) 자손들이 장래 불행할 것이다”라는 등의 저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십여 차례 보내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Q. 얼마 전 한 학부모가 유치원에 찾아와 ‘아이가 여기 다니면서 아토피가 생긴 것 같다’라며 거액의 피부 치료비를 요구하셨고 저희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학부모가 인터넷 게시판에 누구리도 유추가 가능 할 정도로 저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와 함께 ‘이 유치원에 다니면 아토피가 생긴다라는 등의 악의적인 평가와 댓글을 계속 달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비방의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허위事實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정보 유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위 이야기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해를 돋우기 위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례 유형으로 각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 업무방해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호,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1) 개념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하게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 혹은 위계로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혹은 허위事實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방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무 중인 교원에 대해 폭행·협박행위를 하는 경우, 직무/업무라는 법의 또한 침해되었으므로 교육공무원인 교원인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학생을 혼내준다며,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가 관련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교사를 협박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한 경우

제2부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조,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1) 개념

성적 언동(말과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교에서 자녀 상담을 하던 학부모가 성적인 비유와 농담을 반복적으로 하여 담임교사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Q. 가해자가 성희롱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성희롱이 성립되나요?

- A.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성희롱의 의도로 한 언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문제의 언동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동성간에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나요?

- A. 동성간에도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만한 객관적인 행위가 있고, 피해교원이 성적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합니다.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조,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1) 개념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체육교사에게 '수업시간에 야외 체육활동을 하지 말고 자습을 시키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시험 평가에 관하여 교사에게 '시험범위를 줄이라', '시험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느냐? 쉽게 내라'라며 반복적으로 요구·간섭하는 경우

제2부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조,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1) 개념

성적 언동(말과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교에서 자녀 상담을 하던 학부모가 성적인 비유와 농담을 반복적으로 하여 담임교사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Q. 가해자가 성희롱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성희롱이 성립되나요?

A.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성희롱의 의도로 한 언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문제의 언동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동성간에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나요?

A. 동성간에도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만한 객관적인 행위가 있고, 피해교원이 성적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합니다.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조,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1) 개념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체육교사에게 '수업시간에 야외 체육활동을 하지 말고 자습을 시키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시험 평가에 관하여 교사에게 '시험범위를 줄이라', '시험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냐? 쉽게 내라'라며 반복적으로 요구·간섭하는 경우